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KOREAN PHARMACY STUDENTS' ASSOCIATION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회 칙

2019. 02. 09. 일부개정
2020. 08. 22. 일부개정
2021. 01. 30. 일부개정
2023. 01. 28. 일부개정
2024. 01. 20. 일부개정 (의결 전)



전 문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이하 본회)는 대한민국 약학대학 학생들의 자주적 협의체로서 민주적 운영을 통해 약대생들의 연대를 도모하며, 37개 약학대학 11000여 학우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각 약학대학 학생들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요구를 실현하는 단체이다. 우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약대생들이 나아갈 노선과 방향을 제시하고 보건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대한민국 약학대학의 학술과 문화교류, 화합을 위해 힘쓴다. 약학대학 학생들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예비약사로서 참된 약사상을 정립하고 예비보건의료인으로서의 자세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개정 2023.01.28., 2024.01.20.>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① 본회는 대한민국 내에서 설립을 인가받은 약학대학에 속한 약대생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운영되는 학생들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Korean Pharmacy Students' Association)'라 칭한다. <개정 2024.01.20.>
- ② 본회의 이름을 약칭으로 표기할 때는 국문으로 '약대협', 영문으로 'KPSA'라 한다. <개정 2024.01.20.>

제2조 【회원】

- ① 대한민국 내에서 설립을 인가받은 약학대학에 재학 및 휴학 중인 자로 졸업 후 Doctor of pharmacy (Pharm.D)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자는 재학 기간 중에 본회의 회원이 된다. <개정 2023.01.28.>
- ② 본회의 회원으로 있는 자는 졸업과 동시에 본회에서 탈퇴된다.

제3조 【목적】 본회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본회 회원의 권익증진 및 교육 수요 종합을 통한 교육개선 <개정 2023.01.28.>
- ② 약학도의 학문 연마 도모 및 직능 개발 연구
- ③ 본회 회원의 학술 및 문화 교류와 연대
- ④ 국민보건 및 복지 증진 기여

제4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다.
- ③ 본회의 회원이 외부에 의해 교육권을 포함한 부당한 권익 침해를 받을 시에는 본회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및 활동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권리를 갖는다.
- ⑤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세칙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 ⑥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구조】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집행기구, 의사결정기구, 특별기구를 둔다.

- ① 집행기구: 협회장단, 지부운영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 집행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
- ② 의사결정기구: 전체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의, 지부운영위원회의
- ③ 특별기구

제6조 【지부】 대한민국 내에서 설립을 인가받은 약학대학 중 인근지역의 학교들을 하나의 지부로 묶어, 다음 7개 지부로 나눈다.

- ① 남부지부: 서울, 성균관, 숙명, 아주, 중앙, 한양
- ② 동부지부: 강원, 경희, 덕성, 동덕, 삼육, 차 의과학
- ③ 서부지부: 가천, 가톨릭, 동국, 연세, 이화, 제주
- ④ 영남(N)지부: 경북, 계명, 대구가톨릭, 영남
- ⑤ 영남(S)지부: 경상, 경성, 부산, 인제
- ⑥ 중부지부: 고려, 단국, 충남, 충북
- ⑦ 호남지부: 목포, 순천, 우석, 원광, 전남, 전북, 조선

제7조 【의사결정과 집행에 있어서의 원칙】

- ① 토의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문제 제기와 상호 비판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은 하부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다.
- ②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동 통일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행동통일을 전제로 하되, 각 지부는 이외의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2장 의사결정기구

제1절 전체대표자회의

제8조 【지위】 전체대표자회의는 본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제9조 【역할】 전체대표자회의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 ① 본회의 협회장 선출
- ② 본회의 활동의 기본방향에 대한 사항
- ③ 본회의 회칙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사항
- ④ 회원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⑤ 집행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⑥ 기타 전체대표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10조 【의장】

- ① 전체대표자회의의 의장은 본회의 협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② 협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협회장 중, 중앙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역임하고 있는 1인이 대신한다. 다만, 위의 부협회장이 대신할 수 없는 경우 남은 부협회장이 대신한다. <개정 2024.01.20.>
- ③ 제2항을 만족할 수 없는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전체대표자회의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개정 2024.01.20.>
- ④ 임시의장은 협회장단 중 1인이 맡는다. 다만, 위의 협회장단 중 1인이 맡을 수 없는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1인 호선한다. <개정 2024.01.20.>

제11조 【대표자】

- ① 대표자는 제2조에 따라 본회 회원에 해당하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 ②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3인을 대표자라고 칭한다.
 - 1. 대한민국 내에 설립을 인가받은 각 약학대학의 학생대표와 부학생대표 및 임원 1인
 - 2.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2인 및 임원 1인 <개정 2023.01.28.>
 - 3. 약학대학의 부학생대표가 중앙운영위원을 역임하는 경우 부학생대표 및 임원 2인
- ③ 학생대표와 부학생대표가 모두 없는 약학대학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지닌 자를 대표자로 칭한다.
 - 1. 비상대책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2인
 - 2. 비상대책위원회에 준하는 기구의 대표 및 임원 2인

제12조 【대표자의 권한】 전체대표자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지며 별도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3조 【정기전체대표자회의】

- ① 정기전체대표자회의는 1년에 1회로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시기는 1월과 2월 중에 시행한다.
- ③ 소집대상자는 각 약학대학의 현 중앙운영위원 1인과 차기 대표자 2인으로 한다. <개정 2023.01.28.>
- ④ 의결권은 각 약학대학의 현 중앙운영위원 1인과 차기 대표자 2인에게 있다.
- ⑤ 본회의의 차기 협회장을 선출한다. 다만, 협회장 선출의 선거권은 차기 중앙운영위원 1인에게 있다. <개정 2024.01.20.>
- ⑥ 차기 대표자가 없을 경우 소집대상자 의결권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 다만, 협회장 선출 선거권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기구의 장 1인이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3.01.28.>
 - 1.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2인과 현 중앙운영위원
 - 2.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준하는 기구의 임원 2인과 현 중앙운영위원

제14조 【임시전체대표자회의】

- ① 임시전체대표자회의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소집대상자는 각 약학대학의 현 대표자 3인으로 한다.

제15조 【소집】

- ① 전체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전체대표자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 1. 중앙운영위원회회의의 소집요구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전체대표자회의 재적 대표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4.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5. 제66조제2항에 따른 협회장 탄핵안 부의 <개정 2024.01.20.>
 6. 제37조에 따른 회칙개정안 부의
- ②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으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소집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여 전체대표자회의의 개의일을 결정한다.
- ③ 제1항 이외의 긴급한 사항은 소집요구가 없어도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의결로 전체대표자회의의 의장이 전체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소집 공고】

- ① 전체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전체대표자회의의 소집을 개의일 일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집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01.20.>
- 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회의 시작 일시
 2. 회의 장소
 3.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

제17조 【개의·의결요건】

- ① 전체대표자회의는 재적 대표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협회장 탄핵 안건이 상정된 전체대표자회의는 재적 대표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회칙개정안이 상정된 전체대표자회의는 재적 대표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표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출석대표자 과반수가 기권할 경우 논의 후 재의결한다.

제18조 【표결방법】

- ① 표결은 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각 안건에 대하여 거수를 한 대표자의 명단은 기록하지 아니하며, 그 총수만을 기록한다.
-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대표자가 제의하여 전체대표자가 의결하면 무기명으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 ③ 제19조제5호의 안건은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20.>

제19조 【안건】 전체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회가 소집요구와 함께 상정한 안건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1/5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3. 전체대표자회의 재적 대표자 1/5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2개 이상 단위의 본회 회원 1/10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5. 제66조에 따른 협회장 탄핵안
6. 제37조에 따른 회칙개정안



제20조 【안건 위임】

- ① 전체대표자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전체대표자회의의 의결로 중앙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66조에 따른 협회장 탄핵안, 제37조에 따른 회칙개정안은 위임할 수 없다. <개정 2024.01.20.>
- ② 개의하지 못한 전체대표자회의에 발의된 안건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제21조 【개정회칙의 적용 및 공고】

- ① 회칙 개정의 의결이 있은 후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전체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칙 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정리 과정에서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취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1.20.>
- ② 가결되어 변경된 회칙개정 내용을 포함한 약대협 회칙 개정판은 전체대표자회의 종료 이후 3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01.20.>
- ③ 가결되어 변경된 회칙개정 내용은 공고 이후 바로 적용 된다.

제22조 【기록 및 공고】

- ① 서기는 전체대표자회의 내용을 빠짐없이 속기한다.
- ② 속기록과 속기록을 정리한 회의록을 폐회 후 7일 이내로 중앙운영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다.
- ③ 회의록은 폐회 후 14일 이내로 회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다.

제2절 중앙운영위원회의

제23조 【지위】 중앙운영위원회의는 본회의 합리적인 결정을 위해 전체대표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의사결정기구이다.

제24조 【권한】

- ① 중앙운영위원회의는 본회의 전체적인 업무 결정, 노선 제안의 역할을 맡는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의는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업무의 진행 및 중지에 대한 논의를 한다.
- ③ 중앙운영위원회의는 집행위원회에 제안할 업무에 대한 논의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집행위원회의 업무진행에 대해 보고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 【의장】

- ①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본회의 협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② 협회장이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협회장이 대신한다. 다만, 부협회장이 대신할 수 없는 경우 중앙운영위원 중 호선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개정 2024.01.20.>

제26조 【중앙운영위원】

- ① 대한민국 내에서 설립을 인가 받은 약학대학의 학생대표를 중앙운영위원이라 칭한다.
- ② 다만, 중앙운영위원 역임 해당자가 본회의 협회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해당 약학대학의 부학생대표가 중앙운영위원 역할을 위임받는다. <개정 2024.01.20.>



③ **다만**, 각 약학대학의 내부적 특성상 약학대학의 학생대표가 중앙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는 경우, 약학대학의 부학생대표 또는 약학과, 제약학과 학생대표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01.20.>

제27조 【중앙운영위원의 의무】

- ①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한 약학대학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소속 약학대학 회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한 후, 중앙운영위원회에 이를 표명하여야 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은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로서 참여가 해당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며, 제30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불참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01.28., 2024.01.20.>
- ③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회원들에게 알릴 사항을 소속 약학대학 회원들에게 신속하게 공지하여야 한다.
- ④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관련된 공고문, 중앙운영위원회가 명시된 공지 내용을 위원의 판단 하에 변경하여 공지할 수 없다.

제28조 【중앙운영위원의 권한】

- ① 중앙운영위원은 자신이 소속한 약학대학을 대표하는 위원으로서 중앙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 ②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중앙운영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중앙운영위원은 새로운 사안, 업무 등을 제시하고 협회장단에 제안할 수 있다.
- ⑤ 중앙운영위원은 본회에서 진행 중인 사안, 업무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회장단에 진행중지 제안을 할 수 있다.

제29조 【중앙운영위원의 임기】 중앙운영위원의 임기는 협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30조 【대리인】

- ① 중앙운영위원이 중앙운영위원회의 참석이 불가할 경우 대리인이 중앙운영위원회의를 참석할 수 있다.
- ② 대리인은 부학생대표 혹은 학생회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 ③ 대리인은 참석한 중앙운영위원회의에 한하여 해당 중앙운영위원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

제31조 【진행】 의장은 중앙운영위원들의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한다.

제32조 【임시중앙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임시회의는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협회장단의 소집요구
- 2. 중앙상임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
- 3.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

제33조 【개의·의결요건】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제66조제2항의 협회장 탄핵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1.20.>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제37조의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2. 제40조제2항의 집행위원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1.20.>
- ④ 출석위원 과반수가 기권할 경우 논의 후 재의결 한다.

제34조 【표결방법】

- ① 표결은 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각 안건에 대하여 거수를 한 대표자의 명단은 기록하지 아니하며, 그 총수만을 기록한다.
-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대표자가 제의하여 전체중앙운영위원이 의결하면 무기명으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결은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 1. 제66조제2항에 의한 협회장 탄핵안의 전체대표자회의 부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1.20.>
 - 2. 제40조제2항의 집행위원 해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1.20.>

제35조 【안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1. 협회장단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2. 중앙상임위원 1/3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3.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1/3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4. 2개 이상 단위의 본회 회원 1/35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5.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체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안건 <개정 2024.01.20.>
- 6. 제65조제1항에 따라 발의된 협회장단 사퇴 허가 안건 <개정 2024.01.20.>
- 7. 제66조제2항에 따라 발의된 협회장 탄핵안의 전체대표자회의 부의 안건 <개정 2024.01.20.>
- 8. 제37조에 따라 발의된 회칙개정안의 전체대표자회의 부의 안건
- 9. 제40조에 따라 발의된 집행위원회에 관한 안건

제36조 【안건 위임】

- ①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로 산회가 결정되면,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다음 정기중앙운영위원회의로 위임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임할 수 없다.
 - 1. 제65조의 협회장단 사퇴 허가에 관한 사항
 - 2. 제66조의 협회장 탄핵안에 관한 사항
 - 3. 제37조의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 4. 제40조의 집행위원회에 관한 사항
- ③ 개의하지 못한 중앙운영위원회에 발의된 안건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제37조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된 회칙개정안에 대하여 전체대표자회의의 부의를 의결할 수 있다.

- 1. 협회장단의 요구
- 2.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중앙운영위원 1/2 이상의 요구



제38조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탈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② 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중앙운영위원회는 협회장단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 【결정·집행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부운영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 집행위원회, 특별기구의 결정·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40조 【집행위원회에 관한 사항】

- ① 집행위원회는 본회 전체의 위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사전 인준을 거쳐야 한다. 다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대표자회의를 통해 인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1.20.>
 - 1. 집행위원회 사업계획과 정책의 기본방향
 - 2. 집행위원의 임명
 - 3. 집행국 체계의 변경 및 산하 국의 신설·폐지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집행위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41조 【특별기구에 관한 사항】

-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본 회칙 제4장에서 규정하는 특별기구의 설치와 폐지를 의결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기구의 본회 예산 사용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제42조 【기록 및 공고】

- ① 서기는 중앙운영위원회의의 회의 내용을 빠짐없이 속기한다.
- ② 속기록과 속기록을 정리한 회의록을 폐회 후 7일 이내로 중앙운영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다.
- ③ 회의록은 폐회 후 14일 이내로 회원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다.

제3절 지부운영위원회의

제43조 【지위】

- ① 지부운영위원회는 해당지부에 특별한 사항이나 안건에 대해 논의한다.
- ② 필요에 따라 해당지부의 회원들로 이루어진 집행국을 신설할 수 있다.

제44조 【지부운영위원회의】 지부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 ① 지부장의 소집요청
- ② 지부장을 제외한 지부운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청

제45조 【의결】

- ① 지부운영회의에서의 의결은 재적 지부운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가결한다.



- ② 재적 지부운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반대할 경우 부결한다.
- ③ 재적 지부운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기권할 경우 논의 후 재의결 한다.

제46조 【업무의 우선순위】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와 지부운영위원회의 업무가 중복 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가 우선시 되어야한다. 다만, 지부운영위원회에서 미리 정해둔 일정과 중복될 시 지부운영위원회와 협회장단의 논의를 통해 업무순위가 결정된다. <개정 2024.01.20.>

제4절 징계위원회

제47조 【지위】 본회의 회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집행기구, 의사결정기구 및 특별기구의 구성원의 징계 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48조 【업무】 징계위원회는 집행기구, 의사결정기구 및 특별기구의 구성원이 본회의 업무를 불이행하거나, 본회의 업무를 제한할 정도의 피해를 줄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한다.

제49조 【소집】

-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소집된다.
 - 1. 전체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징계위원회 소집 안건
 - 2.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징계위원회 소집 안건
- ② 제1항제2호에 대하여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에 징계위원회 소집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24.01.20.>

제50조 【징계위원장】

- ① 징계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② 징계위원회 소집 안건이 가결되는 즉시 협회장은 징계위원장을 임명하며, 집행기구 및 특별기구에 대한 소집 시 부협회장 중 1인을 징계위원장으로, 의사결정기구에 대한 소집 시 집행위원장을 징계위원장으로 한다.

제51조 【구성】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장 및 징계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장 1인, 중앙상임위원 1인, 중앙운영위원 2인, 중앙운영위원이 아닌 집행위원 2인, 감사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원활한 징계 절차를 위해 집행기구, 의사결정기구 및 특별기구와 본회 자문위원에게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 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장이 임명된 후 48시간 이내에 구성되어야 한다.

제52조 【권한】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판단하고 그 내용을 중앙운영위원회에 공고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해당 사유에 대한 징계내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중앙운영위원회에 공고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징계 마감일까지 징계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그 이유를 묻고, 징계의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3조 【의무】

-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판단 시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본회의 회칙과 세칙에 의거하여 징계사유를 판단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결정된 징계내용을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하고, 기한 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 ④ 징계위원과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징계대상자의 징계 이행이 확인되면 해당 징계위원회는 해산한다.

제54조 【징계위원회 의결】

-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징계위원장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다만, 의결 시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재의결을 진행한다.
- <개정 2024.01.20.>

제55조 【소명의 기회】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6조 【이의제기】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징계 공고 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57조 【징계대상자】 징계 대상 구성원은 징계대상자라 칭한다.

제58조 【징계대상자의 의무】

- ① 징계대상자는 징계내용 이행에 대한 증거를 기한 전까지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징계위원회 업무기간 중 그 직위가 정지된다.

제59조 【징계위원회업무규정】 그 밖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징계위원회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1.20.>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협회장단

제60조 【구성】

- ① 본회의 협회장, 부협회장, 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된다.
- ② 2명 이상의 부협회장 혹은 2명 이상의 집행위원장을 두었을 때에는 그 업무를 분장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제61조 【지위】

- ① 협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중앙운영위원회의 대표자가 된다.
- ② 부협회장은 협회장을 보좌하고, 협회장이 임시로 권한을 위임하거나, 협회장이 부재 시 협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협회장 중 1인은 중앙상임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역임한다.

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최고운영자로서 협회장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집행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한다.

제62조 【권한】

① 협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외활동의 경우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4.01.20.>

② 협회장은 선출 후 48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부협회장,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중앙운영위원회 산하기구의 대표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③ 협회장이 임명할 수 있는 부협회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중 하나이다.

1. 전 중앙운영위원
2. 현 중앙운영위원

④ 협회장이 임명할 수 있는 집행위원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중 하나이다.

1. 전 중앙운영위원
2. 전 집행위원
3. 현 중앙운영위원

⑤ 협회장단은 논의를 통해 본회의 사무 집행을 총괄한다.

⑥ 협회장단은 중앙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를 지휘, 감독한다.

⑦ 협회장단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 집행사항의 변경 및 취소에 대해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변경 및 취소가 가능하다.

⑧ 협회장단에서 특히 필요하다 인정한 사안의 효율적 업무 진행을 위해서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⑨ 즉시 결정되어야 하는 긴급한 사항의 경우, 협회장단의 판단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나 24시간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 및 상황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63조 【의무】

① 협회장단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단은 본회의 모든 사안에 대해 최초 논의 후 의결기구에 안건을 상정하고 중앙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중앙상임위원회에 업무 진행을 전달한다.

③ 본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산하 학생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 차기 협회장단의 선출과 차기 협회장단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 차기 협회장단의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4조 【임기】

① 협회장의 임기는 정기전체대표자회의에서 선출 된 48시간 후부터 다음 정기전체 대표자회의에서 다음 협회장 선출 혹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48시간 후 까지로 한다.

② 부협회장의 임기는 협회장과 같이 한다.

③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협회장과 같이 한다.

제65조 【사퇴】



- ① 협회장단이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다만, 사망 등의 자의가 아닌 상황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협회장이 사퇴한 경우 부협회장 중 1인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66조 【탄핵】

- ① 협회장이 회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 수행 상 부당한 행위를 하여, 본회 회원들의 권익 혹은 본회의 위상에 심히 손상을 야기하였을 경우 탄핵할 수 있다.
- ② 협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1. 전체대표자회의 재적 대표자 1/2 이상의 연서
 - 2. 2개 이상 단위의 본회 회원 1/10 이상의 연서
- ③ 중앙운영위원회 임시의장은 탄핵안 발의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2항의 연서를 심의하고, 탄핵안의 전체대표자회의 부의를 심의하고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회 임시의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따라 중앙운영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의 직후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 ④ 탄핵안을 안건으로 한 중앙운영위원회의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중앙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체대표자회의의 부의를 의결한다. 의장은 부의 의결 이후 전체대표자회의의 소집 일정을 즉시 결정한다.

제67조 【직무정지】 제66조제2항에 따라 협회장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경우 그 대상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탄핵 부의안이 부결되거나, 전체대표자회의에서 탄핵안이 부결되기 전까지는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개정 2024.01.20.>

제2절 지부운영위원회

제68조 【지위】 지부운영위원회는 본회 각 지부의 집행기구이다.

제69조 【구성】 본회에 가입된 학교는 제6조에 의거하여 나뉘며 각 지부는 독립적 지부운영위원회를 가진다. <개정 2024.01.20.>

제70조 【지부운영위원】

- ① 해당지부의 지부장이 지부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
- ② 해당지부의 중앙운영위원이 지부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71조 【지부원】 해당지부를 구성하는 본회의 회원들은 본회의 회원과 해당지부의 지부원을 겸임한다.

제72조 【권한】

- ① 지부운영위원회는 지부운영을 위한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지부운영위원회는 지부운영에 필요한 지부운영위원회 회칙을 둘 수 있다.

제73조 【의무】

- ① 지부운영위원회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은 본회의 총 노선과 이념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 ② 지부운영위원회 내부의 회칙은 본회의 총 노선과 이념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 ③ 본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업무와 지부의 업무가 중복될 시 본회 전체의 업무가 우선시 된다.

제74조 【임기】 지부운영위원의 임기는 협회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제3절 중앙상임위원회

제75조 【지위】 협회장단과 본회의 사항에 대해 상호 전달하는 집행기구이다.

제76조 【구성】

- ① 본회의 부협회장 중 협회장이 지정한 1인이 위원장을 역임한다.
- ② 각 지부장이 위원직을 역임한다.

제77조 【역할】

- 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위임 받은 안건을 처리한다.
- ② 지부 간 상호교류를 활성화한다.
- ③ 협회장단이 독단적으로 행동할 경우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제4절 집행위원회

제78조 【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79조 【구성 및 권한】

- ①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으로 구성된다.
- ② 집행국장, 집행국 차장, 집행국원을 집행위원으로 칭한다.
- ③ 집행위원장을 총괄책임자로 하여 필요한 집행국 체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전체대표자회의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④ 각 국별로 집행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체대표자회의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⑤ 각 집행국은 필요시 전체대표자회의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신설, 변경 및 통폐합 될 수 있다. 다만, 집행국이 폐국된 경우 해당국을 구성하는 집행위원은 적절한 국에 배치되어야 한다.

<개정 2024.01.20.>

제80조 【집행국장】

- ① 본회의 중앙운영위원이 집행국장을 겸임한다. 다만, 일반 회원을 대상으로 집행국장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4.01.20.>
- ② 집행국장은 해당 집행국 내의 업무진행을 총괄하며 집행위원장과 상호 의사를 교환한다.
- ③ 집행국장은 해당 집행국에 속한 집행국원에 대한 파면을 협회장단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적절한 사유가 필요하다. <개정 2024.01.20.>
- ④ 집행국장은 새로운 업무, 사업 등을 집행위원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 ⑤ 집행국장의 부재 시 차장이 해당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차장을 두지 않은 국의 경우 집행국원 중 1인이 해당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01.20.>



제81조 【집행국원】

- ① 협회장단, 지부장, 집행국장, 집행국 차장을 제외한 중앙운영위원은 의무적으로 하나 이상의 집행국에 속해 집행국원을 겸임해야 한다.
- ② 중앙운영위원을 제외한 본회의 회원은 선발과정을 거친 후 집행국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 ③ 집행위원은 새로운 업무, 사업 등을 집행위원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제82조 【재무】 집행위원회는 업무 시 예산심의회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 본회의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83조 【임기】

- ① 집행위원의 임기는 협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 ②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전체대표자회의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해당 집행위원의 해임을 제안할 수 있다.

제84조 【활동인증】

- ① 본회는 운영목적이 완료되거나 1년 동안 성실하게 활동한 집행위원에게 활동 인증서를 발급한다.
- ② 인증을 받은 집행위원의 명단은 영구적으로 기록 및 등록되며 공식적인 활동경력으로 인정한다.

제5절 비상대책위원회

제85조 【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항의 공고 후 48시간 후 구성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전체대표자회의 이후 즉시 구성되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설립된 즉시 현 협회장의 임기는 종료된다. <개정 2024.01.20.>

- 1. 협회장 선거가 무산되어 당선자가 없을 시
- 2. 협회장 사퇴 시
- 3. 협회장이 탄핵 될 시

제86조 【비상대책위원】 제85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구성 시점 기준으로 각 약학대학 학생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87조 【비상대책위원장】

- 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들이 현(現)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85조제1호에 의해 비상대책 위원회가 설립된 경우 현 위원 및 전(前) 중앙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01.20.>
- ② 비상대책위원장은 협회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 ③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운영한다.

제88조 【권한】

-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갖는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협회장의 궐위기간 동안 중앙운영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③ 비상대책위원회는 협회장의 궐위기간 동안 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시 집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9조 【의무】 비상대책위원회는 협회장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90조 【임시집행위원회】

- ① 임시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며, 협회장의 궐위기간 동안 집행위원회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 ② 임시집행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제62조제4항의 각 호의 조건에 맞는 자를 임명한다. <개정 2024.01.20.>
- ③ 비상대책위원장은 임시 집행국장의 임면권을 가진다.
- ④ 비상대책위원장 및 집행국장은 필요 시, 임시집행위원을 모집, 공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91조 【임기】

- ①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협회장 당선 후 48시간까지로 한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협회장 당선 48시간 후 중앙운영위원회로 전환되어 차기 협회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제6절 감사위원회

제92조 【지위】 감사위원회는 본 회의 재정 감사를 위하여 전체학생대표자가 일정 권한을 부여한 상설적인 위원회이다.

제93조 【감사위원장】

- ① 감사위원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아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 1. 협회장
 - 2. 중앙상임위원회
 - 3. 집행위원회
- ② 제1항의 각 호는 최대 1인을 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집행기구 및 의사결정기구에 속한 자는 추천할 수 없다.
-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협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장을 추천할 시 임기 내 개인의 일정으로 인해 감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를 추천한다. <신설 2024.01.20.>
- ⑤ 감사위원장은 선출된 후 1주일 이내에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신설 2024.01.20.>

제94조 【감사위원】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감사위원이 된다.
 - 1. 중앙상임위원 중 1인
 - 2. 집행국장 중 1인
 - 3. 감사위원장이 추천한 자 (최대 2인)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각각 중앙상임위원회와 집행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임명한다. 다만, 중앙상임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은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01.20.>



제95조 【의무】

- ① 감사위원회는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양심과 회칙에 따라 엄정한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6개월마다 정기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96조 【정기감사】

- ① 감사위원회는 전체대표자회의 30일 전부터 정기감사를 수행한다.
- ② 정기감사는 전체대표자회의에서 보고한다. 다만, 전체대표자회의가 없을 경우 정기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개정 2024.01.20.>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기구의 대표자 혹은 사업담당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7조 【임시감사】

- ① 다음과 같은 경우 감사위원회는 협회장단에 임시감사 시행의 의결을 요청한다.
 - 1. 협회장의 시행요구
 - 2. 중앙운영위원 1/2 이상의 시행요구
 - 3. 본회의 전체회원수중 1/10 이상의 인원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
- ② 위원회의 임시감사의 시행 요청시 협회장단은 요청 3일 이내에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이 거부된 경우 협회장단은 의결 2일 이내에 공식 온라인 회의를 통해 의견표명을 해야 한다.
- ③ 임시감사는 시행여부가 결정된 후 최대 30일까지 진행될 수 있으며 연장은 불가능하다.
- ④ 임시감사 결과 보고는 반드시 온라인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 ⑤ 협회장의 임기 내에 특별한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에 임시감사가 진행되었던 사안은 임기 내에 다시 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4장 특별기구

제98조 【지위】 특별한 경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임시 혹은 상설로 협회장단 산하에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99조 【구성】 중앙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본회의 회원이 기구의 장을 역임하고 본회의 회원을 기구의 일원으로 구성한다.

제100조 【특별기구신설규정】 그 밖의 특별기구에 관한 사항은 「특별기구신설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협회장선거

제1절 선거



제101조 【선거】 협회장 선거는 간선제로 진행된다.

제102조 【선거권】 선거권은 차기 중앙운영위원회에 부여한다.

제103조 【피선거권】 협회장 선거의 입후보자 등록자격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하여 주어진다.

1. 현 중앙운영위원
2. 차기 중앙운영위원
3. 역대 본회의 운영진

제2절 선거관리위원회

제104조 【지위】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협회장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반의 업무를 세칙에 의거하여 집행, 조정할 권한을 중앙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선거에 있어서의 최고의결기구이다.
- ② 중앙선관위는 선거 및 유관사업에 대한 유일한 관할권을 가지며,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회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활동한다. <개정 2024.01.20.>

제105조 【구성】

- ① 중앙선거관리위원(이하 중앙선관위원)은 각 지부장으로 하며 정기전체대표자회의 30일 전까지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중앙선관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가 수립되었을 경우 중앙선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다. <개정 2024.01.20.>

제106조 【역할 및 권한】

- ① 협회장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사업 및 활동을 기획, 집행한다.
- ② 중앙선관위가 각 선거운동 본부(이하 선본)와 합의한 방식에 의거하여 선거에 관련한 집행을 감시한다.
- ③ 선본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한다.
- ④ 선본이 아닌 본회의 회원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막거나 최소화한다.
- ⑤ 선본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질의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선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시 중재 및 조정권을 갖는다.

제3절 선거의 시기와 방법

제107조 【선거일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전체대표자회의 20일 전에 이를 공고하고, 전체대표자회의 개회 10일 전까지 후보등록을 마감한다.

제108조 【시기】 협회장 선거는 정기전체대표자회의 중에 실시한다.



제109조 【선거시행세칙】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01.20.>

제6장 재정

제110조 【원칙】 본회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01.28.>

제111조 【관리】 본회의 재정은 사무를 담당하는 집행국에서 관리한다.

제112조 【의무】

- ① 재정을 담당하는 집행국은 본회의 사업 진행 시 재정을 관리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 ② 본회의 사업과 그 외에 사용한 모든 재정 사용 보고는 해당 재정 사용 후 개최하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한다. <개정 2024.01.20.>
- ③ 재정보고를 진행한 회의 이후 7일 이내로 재정보고서를 중앙운영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다.

제11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기간은 협회장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114조 【수입·환불】

- ① 본회 재정의 수입은 학교별 분담금, 사업별 후원금, 그 밖의 수익금이 있다. <개정 2023.01.28.>
- ② 각 약학대학은 협회장 임기 초에 일괄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며, 이를 협회비로 지정한다. <신설 2023.01.28.>
- ③ 협회비 금액 책정은 협회장 임기 첫 중앙운영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며, 이 외에 협회비에 관련한 사항은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협회비 수납 시행세칙」을 따른다. <신설 2023.01.28., 2024.01.20.>
- ④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협회비는 협회장 임기 말에 각 학교에 환불한다. <신설 2023.01.28.>
- ⑤ 협회비 납부 시기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운영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3.01.28.>

제115조 【사용】

- ① 협회비는 본회의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사용한다.
 - ② 후원금은 필요에 따라 행사 진행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운영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 ③ 협회장단 및 중앙운영위원회의의 활동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활동비 시행세칙」에 따라 사용한다. <신설 2024.01.20.>
 - ④ 협회장단이 본회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는 협회비를 사용할 수가 있으며, 이는 중앙운영위원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4.01.20.>
- [본조신설 2023.01.28.]



제7장 부칙

제116조 【효력발휘】 위의 규약은 의결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1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16조는 제117조로 이동 <2023.01.28.>]

제117조 【기타】 규약 이외의 사항은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행한다.

[제116조에서 이동 <2023.01.28.>]

제8장 시행세칙

제118조 【시행세칙】 본회의 필요에 따라 본회 집행에 대한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01.28.>